

4.4.16 가족회사 운영 지침

제정 2017. 09. 14.

개정 2022. 07. 20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가족회사”라 함은 본 대학교와 현장실습·취업,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, 공동연구, 교육 프로그램, 공용장비 이용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.
2. “산업체”란 본 대학교와 협력이 필요한 기업, 연구소, 공공기관, 마을기업,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.
3. “가족회사 대표”란 본 대학교에 가입된 가족회사 전원을 대표하는 자로 가족회사 중 대표로 선출된 기업체의 대표이사를 말한다.

제 2 장 운 영 사 항

제3조(담당부서) ① 가족회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한다.

②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족회사의 승인, 탈퇴 및 정보관리
2. 가족회사 상담 및 지원
3. 가족회사의 임직원 교육 및 기술개발 등 지원활동
4. 기술, 경영, 마케팅, 특허, 디자인 등 종합지원
5. 기타 가족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가입기준) ① 가족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하나이상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본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이 가능한 민간기업
2. 본 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추진 방향/목적에 부합하는 국,공립기관 및 민간연구소

제5조(가입 및 승인) ① 가족회사 가입을 원하는 산업체는 산학협력단과 가족회사 상담을 진행 후

<별지서식1>의 가입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으로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. 다만, 기존에 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산업체는 신청서를 생략하고 가입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.

1. 영세 소매업 및 단순노무업체
2. 휴업 및 폐업이 확인된 기업
3. 생산적 활동이 전혀 없는 유명기업
4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기업

제6조(협약서발급) ① 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<별지서식3>, <별지서식4>의 가족회사 인증서, 가족회사협약서를 발급한다.

② 가족회사협약서를 분실 등의 이유로 가족회사가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재발급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해지 및 탈퇴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족회사 탈퇴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가족회사가 <별지서식2>의 가족회사 탈퇴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
2. 가족회사가 부도·법정관리·폐업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
3. 가족회사의 대표이사가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경우
4.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른 경우

제8조(가족회사에 대한 지원) 본 대학교는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족회사 기술개발 및 애로사항 해결 등 기술지원 사업 참여
2. 가족회사 경영자문등 맞춤형 지원 사업 참여
3. 공동기기 활용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
4.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 참여취업
5. 산학협력 관련 포럼 및 산학연 컨소시엄, 간담회등의 참여
6. 비전임교원 선정 시 우선 검토
7. 평생교육원 수강 시 교육비 일부감면
8. 도서관이용
9. 장학금지급

제9조(등급관리) ①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.

② 등급관리기준은 <별표1>과 같다.

③ 산학협력단은 <별표2>의 가족회사의 등급에 따라 가족회사에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유료회원제 가족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, <별표3>의 가족회사 유료회원

제 등급에 따라 가족회사에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.<신설 2022.07.20.>

1. 유료회원제 가족회사 등급별 연회비는 다음과 같으며, 연회비는 가족회사 신청 시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22.07.20.>

등급	Silver	Gold
연회비	30만원	50만원

2. 연회비를 납부한 유료회원제 가족회사의 등급 유지기간은 납부일로부터 1년간이며,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일반관리 기업 등급으로 유지된다.<신설 2022.07.20.>
3. 유료회원제 가족회사에서 납부한 연회비는 탈퇴 및 중도해지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.<신설 2022.07.20.>
4. 유료회원제 가족회사의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며,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.<신설 2022.07.20.>
5. 가족회사에서 납부한 연회비 총액의 10%는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징수한다.<신설 2022.07.20.>
6. 간접비를 공제한 연회비는 소속 산학협의회 운영비 등 가족회사와 관련한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.<신설 2022.07.20.>

제 3 장 활 동

제10조(가족회사 의무) 가족회사는 이 대학교가 제공하는 산학협력 지원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, 제반규정을 준수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갖는다.

제11조(기술교류회) 기업과 대학 간 상호연계 협력을 위하여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2조(가족회사 대표) ① 가족회사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회사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.

② 가족회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가족회사 대표는 가족회사 전원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의 건의
2. 대학의 중요한 행사의 참여
3. 기타 필요한 사항

④ 가족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(대표)를 둘 수 있다.

제 4 장 기 타

제13조(정보보호)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
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 등급관리기준

○ 등급관리기준

구 분	등 급	분류기준	비 고
Level 1	일반관리 기업	•MOU 체결기관 •산학협력 사업 참여기업 •가족회사 가입 기업	
Level 2	우수관리 기업	•산학연계과제 2,000만원 이하 기업 •기술이전 1,500만원 이하 기업 •단기산학교육 참여기업 •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기업 •연구장비 활용 기업 •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•계약학과 참여 기업	
Level 3	중점관리 핵심기업	•산학연계과제 2,000만원 이상 기업 •기술이전 1,500만원 이상 기업 •1개 계약학과에 5개 이내 공동 참여기업 •발전기금 1억원 이상 기증 기업	

<별표2> 가족회사 등급별 지원

○가족회사 등급별 지원

등 급	Level 1	Level 2	Level 3
기 업	일반관리 기업	우수관리 기업	중점관리 핵심기업
주요 지원	- 대학·가족회사간 산학 정기네트워킹 포럼 초청 - 산학협력 사업 참여 - 기업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- 인적·물적교류 지원 -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원	- Level 1의 모든 혜택 포함 - 기술이전 -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 - 산학연계 연구과제 우선 지원 - 산학협력사업 우선 참여 - 정부지원사업 지원 - 지자체 등의 산학협력사업 참여 지원 -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원	- Level 2의 모든 혜택 포함 - 산학공동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지원 - 공용장비 우선 지원 및 사용료 할인 -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- 재직자교육 지원 - 기술지도 및 자문 지원 -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원

<별표3> 유료회원제 가족회사 등급별 지원<신설 2022.07.20.>

○ 유료회원제 가족회사 등급별 지원

등 급	Silver	Gold
연회비	30만원	50만원
주요 지원	- 대학가족회사간 산학 정기네트워크 포럼 초청 - 산학협력 사업 참여 - 기업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- 인적·물적교류 지원 - 기술이전 -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 - 산학연계 연구과제 우선 지원 - 산학협력사업 우선 참여 - 정부지원사업 지원 - 지자체 등의 산학협력사업 참여 지원 -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원	- Silver의 모든 혜택 포함 - 산학공동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지원 - 공용장비 우선 지원 및 사용료 할인 -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- 재직자교육 지원 - 기술지도 및 자문 지원 -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원

<별지서식 1> 초당대학교 가족회사 가입 신청서<개정 후 2022.07.20.>

[illegible]

<별지서식 2> 초당대학교 가족회사 탈퇴 신청서

접수번호			
초당대학교 가족회사 탈퇴 신청서			
업 체 명			대표자
사업자등록번호			연락처
실무담당자	성 명		부서/직위
	연락처		E-mail
초당대학교 참여사업명			
산학협력 참여내역			
탈퇴사유			
초당대학교에서 운영하는 「초당대학교 가족회사」에 탈퇴하고자 이상과 같이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자 : (인 또는 서명)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T.(061)450-1300 F.(061)450-1039			

<별지서식 3> 가족회사 인증서

제 호

가 족 회 사 인 증 서

기 관 명 :

대표이사 :

귀 기관은 우리 대학과 산학협력 활동을 통하여 고급기술
인력 양성과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초당대학교 가
족회사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20 년 월 일

초 당 대 학 교 총 장

가 족 회 사 협 약 서

초당대학교와 _____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은(는)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-기업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기업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및 학술 교류
- 나. 대학생의 현장실습 및 견학, 산학연계 교육 참여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
- 다.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, 인적·물적 교류
- 라. 산학협력 기술개발·이전 및 사업화,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
- 마. 학생의 취업연계 협력
- 바. 대학장학금 지급 및 지원금 참여
- 사. 기타 기업 재직자 교육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학협력 사업추진 및 교류

제3조(비용부담)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제5조(협정서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향후 양 기관간의 협약사항 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.

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(날인)후 각 1부 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

기업명

단 장

(직인)

대 표

(직인)